

2023년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10.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5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44건(안건번호 제2023-86818호~8836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86818호(순번 1번)는 타인의 출판물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글의 성격상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86819호~86829호(순번 2번~12번)는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6830호~86832호(순번 13번~15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6833호(순번 16번)는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로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86834호~88361호(순번 17번~1544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2,60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선화 선임: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전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66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전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632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국내 e스포츠 커뮤니티 사이트 '▲▲▲▲▲'에 게시된 일본 만화의 불법복제물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 만화 '☆☆☆☆☆ ☆☆'의 일부 장면을 이미지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해당 게시물은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 및 전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 제한 사유 해당성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출판저작물의 일부를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용의 정도가 인용의 요건인 비평 등에 이르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과는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음.

게시글의 내용이나 댓글 내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원저작물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원저작물을 대체하여 합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출판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으나,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글의 성격상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합법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만화의 일부를 이용중인 커뮤니티 계

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저 정도 분량의 이용이면 게시글 성격상 우리 시정권고 취지와는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함.
- B 위원: 게시자의 다른 글들을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 김선화 선임: 출처 표시로 보아 모두 타인의 게시물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중에는 저작권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임. 연속하여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있지는 않음.
- A 위원: 타인의 게시글을 일부 이용하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은 한 두줄 기재하고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음.
- B 위원: 경고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무분별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다 쓰고 있다고 보여짐.
- A 위원: 그렇기는 하나, 합법 시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크다고 보기 어려움.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글만 보자면 경고의 시정권고로 가결하기 과한 부분이 있음. 광고도 없고, 일부 이용한 분량이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의문스러움.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타인의 게시글 사용에 있어서 조

심하라는 의미로 경고 가결도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됨.

- A 위원: 그동안에 심의해 왔던 기준으로 심의대상 게시물만 봤을 때는 이용 분량과 게시물 성격 상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 내지 12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영상 불법복제물 총 12건임.
순번 2번 내지 11번은 동일한 카페에 동일 게시자가 게시한 사안으로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60분 분량으로 동일하게 게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원저작물의 전체분량에서 50%~100%에 해당하는 분량임.
순번 12번은 개인 블로그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일부를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은 2022. 9. 30. ♣♣♣♣♣ ♣♣를 통해 국내 정식 방영된 총 75분 영상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에 게시된 영상은 원저작물의 앞부분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원저작물의 상당량 또는 전체 분량을 그대로 불법복제하여 누구나 감상이 가능하도록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

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번 내지 12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2 내지 11번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순번 12번은 전체분량에서 상당량이 아닌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본인 생각이나 의견없이 복제하여 이용하고 있긴 한데 또 게시물에 광고도 없음.

- 김선화 선임: ♣♣♣♣♣ ♣♣에서 방영된 부분을 그대로 앞부분만 가져온 것으로 보임.

- B 위원: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C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 내지 12번은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3번 내지 1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 총 3건을 게시한 사안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 정식 번역 출

간되어 현재 연재중인 일본 만화의 단행본 한 권 분량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3번 내지 15번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번 내지 15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사안 총 8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만화 '♡♡♡♡♡ ♡♡ ♡♡♡♡'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하고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는 '◆◆◆◆'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온라인 서비스이고, 2022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 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6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6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번 내지 154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60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범죄도시3'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4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범죄도시3'임. 2023. 5. 31.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09번은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으로, 2023. 7. 4.에 방영된 드라마의 한편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드라마 '행복배틀'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6번은 드라마 '행복배틀'임. 2023. 6. 28.에 방영된 드라마의 한 화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17번부터 1544번까지 총 2,608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7번 내지 154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6818호(순번 1번)에 대해 부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86819호~88361호(순번 2번~1544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6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7.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김연희